



: 2018-04-27

부 산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4866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REDACTED]

2. [REDACTE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REDACTED]

[REDACTED]

피고, 항소인

1.

[REDACTED]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20665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14.

판 결 선 고

2018. 4.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60,000,000원, 원고 []에게 40,000,000원, 피고 []는 원고 []에게 13,342,792원, 원고 []에게 9,561,8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는 전주시 완산구 [], 1층 []에서 []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동이륜차 대여업(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¹⁾(대인 1인당 보상한도 100,000,000원, 대인 1사고당 보상한도 500,000,000원, 대인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망 []는 2015. 8. 14. 피고 []로부터 일명 '퀵보드'인 전동이륜차 2대(이하 '이 사건 전동이륜차'라 한다)를 임차해 그 중 1대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에 있는 경기전²⁾(이하 '경기전'이라 한다) 내에서 타고 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1) 동 계약 약관상 사고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 조선시대의 유적인 廟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일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망 [redacted] 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 [redacted] 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redacted] 은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redacted]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redacted] 는 전동이륜차 대여업자로서, 전동이륜차 이용자(임차인)에게 전동이륜차의 사용방법 및 출입금지구역(경기전)을 충분히 알려주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redacted] 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전동이륜차와 같이 그 구조나 성능 등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물건을 임대함에 있어서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전동이륜차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임차인에게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는 위 임대차계약에 있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



적인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사용방법, 안전수칙 등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redacted]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redacted]의 직원은 이 사건 당시 망인과 원고 [redacted]에게 이 사건 전동이륜차의 작동방법을 설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과 원고 [redacted]은 이 사건 전동이륜차를 시운전하기도 한 점, 피고 [redacted]는 이 사건 점포의 벽에 전동이륜차의 운행에 대한 안전주의사항(과속 금지, 음주운전 금지, 혼자 탈 것, 야간 조명 켜 것 등)을 부착해 놓은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경기전은 장애물이 없는 평지로서, 망인은 원고 [redacted]을 뒤따라 가다가 자신의 지병(과거 뇌경색 수술)에 의해 이 사건 전동이륜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경기전 출입 여부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경기전은 일반적으로 관리인을 통해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망인이 들어간 경기전 동문에 자전거 출입금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피고 [redacted]가 제공한 경로 안내문에도 경기전 내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redacted]가 사용방법, 출입금지구역, 안전수칙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안전모 제공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 [redacted]의 직원들이 망인에게 안전모의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redacted]는 망인에게 안전모 제공의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운행시 필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운전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의 게시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2) 피고 [redacted]는 이 사건 점포의 벽면에 안전모들을 진열해 놓고, 전동이륜차 이용자들에게 위 안전모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는데(1세트임), 이 사건 당시에도 여러



개의 안전모가 위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었다.

3) 망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직원과 대화를 나눈 뒤 위 안전모 진열대에서 직접 안전모를 골라 원고 [REDACTED]에게 착용하도록 하였고, 평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있어 전동이륜차의 조작에 능숙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안전모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 및 전동이륜차의 위험성, 안전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이 사건 전동이륜차에 어떠한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피고 [REDACTED]가 제공한 안전모를 자의로 착용하지 않은 점, 사고 장소는 위 피고의 영업공간을 상당히 벗어난 점, 운전능숙한 망인이 평지에서 별다른 장애물이 없음에도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킨 점에 비추어 자신의 지병이나 과속 등 위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영역에서의 선행적 원인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 피고의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상책임도 역시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³⁾.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3) 2015. 10. '대여 전동이륜차(전동휠) 안전실태조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논문 참조.



.
: 2018-04-27

판사 민희진

판사 이지혜